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6. 5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우리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시범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, 우리구 조직을 복지·보건·고용·주거·문화 등 종합적인 전달체제로 개편하여 수요자인 구민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구분청 국 명칭변경

- 기획재정국 ⇒ 재정경제국
- 생활복지국 ⇒ 주민생활지원국

나. 부서신설 및 통폐합

- 신 설
 - 주민생활지원과(주민생활지원국 소속)
 - 전산정보과(행정국 소속)⇒기획예산과에서 분리 신설
- 통 폐 합 : 자치행정과+재난안전관리과⇒자치행정과(행정국소속)

다. 소관업무조정

- 제5조 행정국의 “새마을,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, 문화·예술진흥에 관한 사항, 관광진흥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,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”을 제7조 생활복지국으로 하고,
- 제6조 기획재정국의 “구정의 기획·조정·업무평가에 관한 사항,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,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”을 제5조의 행정국으로 하고
- 제7조 생활복지국의 “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, 상공업 및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, 소비자보호·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관한 사항, 농·수·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”을 제6조 기획재정국으로 하고
- 제7조 생활복지국의 “대기보전 및 소음·진동대책에 관한 사항, 수질보전·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,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,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”을 제8조 도시관리국으로 하고
- 제8조 도시관리국의 “토지관리·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,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제6조 기획재정국으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- 지방자치법 제102조(행정기구)
-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-1220(2006. 4. 5)호 :
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계획

○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-1428(2006. 4.19)호 :

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

○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 처리규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참고사항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2006. 5. 10 ~ 5. 30(20일간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, 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기획재정국, 생활복지국”을 “재정경제국, 주민생활지원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행정국에 총무과, 기획예산과,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, 민원여권과, 전산정보과를 둔다.

제5조제②항 중 제4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, 동조제②항에 제23호 내지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3. 구정의 기획·조정·업무평가에 관한 사항
- 24.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
- 25.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
- 26.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
제6조의 제목 “(기획재정국)”을 “(재정경제국)”으로 하고, 동조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재정경제국에 재무과, 세무관리과, 부과과, 지역경제과, 지적과를 둔다.

제6조제②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②항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, 동조제②항에 제10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10.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
11. 상공업 및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
12. 소비자보호·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13. 농·수·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
14. 토지관리, 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
15.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

제7조의 제목 “(생활복지국)”을 “(주민생활지원국)”으로 하고, 동조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문화체육과를 둔다.

제7조제②항 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②항 중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, 동조제②항에 제16호 내지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새마을,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
17. 문화·예술진흥에 관한 사항
18. 관광진흥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
19.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
20.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

제8조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도시관리국에 도시관리과, 청소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 및 환경과를 둔다.

제8조제②항 중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, 동조제②항에 제10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
11.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12. 대기보전 및 소음·진동대책에 관한 사항
13. 수질보전·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기구의 폐지·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)

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“기획재정국”을 “재정경제국”으로 하고, 동조동항 제3호가목 중 “생활복지국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”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동조동항제1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,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재무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(公有)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“기획재정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, 제9조제3항 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재정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재무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생활복지국장”을 “도시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국의 설치)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, <u>기획재정국, 생활복지국,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을 둔다.</u></p>	<p>제3조 (국의 설치)----- -----<u>재정경제국, 주민생활지원국,</u> -----</p>
<p>제5조(행정국) <u>①행정국에 총무과, 민원여권과, 문화체육과, 재난안전관리과 및</u> <u>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(생 략) 1.~3. (생 략) 4. <u>새마을,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</u> <u>지원</u> 5.~13. (생 략) 14.<u>문화·예술진흥에 관한 사항</u> 15.<u>관광진흥 및 문화제에 관한 사항</u> 16.<u>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</u> 17.~22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5조(행정국) <u>①행정국에 총무과, 기획예산과,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, 민원여권과, 전산정보과를 둔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1.~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5.~1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17.~22. (현행과 같음) <u>23.구정의 기획·조정·업무평가에 관한</u> <u>사항</u> <u>24.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25.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</u> <u>26.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기획재정국) ①<u>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, 재무과, 세무관리과, 부과과를 둔다.</u></p> <p>②<u>기획재정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</u>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<u>7.구정의 기획·조정·업무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8.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9.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(재정경제국) ①<u>재정경제국에 재무과, 세무관리과, 부과과, 지역경제과, 지적과를 둔다.</u></p> <p>②<u>재정경제국장은 -----</u>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10.중소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1.상공업 및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2.소비자보호·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3.농·수·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4.토지관리, 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5.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생활복지국) ①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지역경제과, 환경과 및 청소과를 둔다.</p> <p>②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</p> <p>6.상공업 및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</p> <p>7.소비자보호·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8. (생략)</p> <p>9.농·수·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</p> <p>10.대기보전 및 소음·진동대책에 관한 사항</p> <p>11.수질보전·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</p> <p>12.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</p> <p>13.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</p> <p>14~1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7조 (주민생활지원국) 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,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문화체육과를 둔다.</p> <p>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-----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14~15.(현행과 같음)</p> <p>16.새마을,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</p> <p>17.문화·예술진흥에 관한 사항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제8조(도시관리국)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관리과, 건축과, 지적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<u>7.토지관리,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8.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<u>18.관광진흥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9.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0.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제8조(도시관리국)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관리과, 청소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 및 환경과를 둔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1.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2.대기보전 및 소음·진동대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13.수질보전·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</u></p>